

2023년 11월 15일

Preview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웹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둔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령을 통해 보호될 수 있어 그 법적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과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데이터 부정 탈취 행위 대응 사례 등을 통해 법적 기준과 권리자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최신 판례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이해

민후 소식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양진영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 올라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리걸이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최신 판례

2018년 발생한 개인정보 역대 최대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처리하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8700만 개가 제3자 앱에 제공·판매돼 사용자 정치성향 분석이나 정치적 선거 등에 이용된 사건으로,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충격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CA 스캔들이 알려지자,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메타에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미국 FTC는 역대 최고인 50억 달러(한화 6조원)의 벌금을, 영국 ICO는 법정 최고한도인 50만 파운드(한화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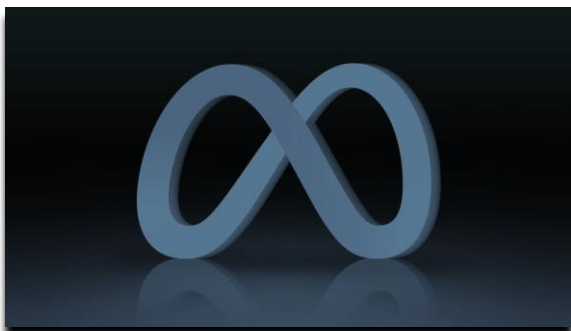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당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역시 메타를 상대로 CA 스캔들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제1호 처분이었다. 메타는 다투었고, 2023년 10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개보위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메타간 합의 등으로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최초로 법원이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판결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메타는 제3자 앱이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Graph API를 개발·도입했고, 제3자 앱은 Graph API를 사용해 메타로부터 받을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 이러한 선택을 기초로 메타는 서버에 저장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의 법정 고지사항을 표시해 안내하거나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메타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개인정보 이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없는 위법한 제공으로 판단했다.

메타는 여기에 더해, 제3자 앱에 제공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개인정보이므로 과거 로앤비 판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이 제시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자의 별도 동의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의 주장을 배척하며 로앤비 판결에서 나온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더욱 구체화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른 판단기준과 이익형량에 의한 판단기준을 모두 적용해 처리의 적법성을 따져야 하고, 둘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래 동의를 구할 때 고지되는 4가지 법정 고지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셋째, 해당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과 처리자의 처리 목적 사이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위와 같이 로앤비 판결의 적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리걸이슈

데이터 부정사용에 관한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이해

2022년 4월 2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위 개정법의 핵심 개정사항은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인데(카목 및 타목 부정경쟁행위), 아직 사례와 판례가 누적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데이터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7
E. wonjs@minwho.kr

(카)목 부정경쟁행위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는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② 업(業)으로서 ③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④ 전자적 방법으로 ⑤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⑥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⑦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는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7개의 표지를 충족하면 본 규정의 데이터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1.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뜻하는데(데이터산업법 제2조 제1호), 여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2. 업(業)으로서 제공

유사사례의 법원 판시에 비추어, 영업을 위해 반복적이고 계속적 의사로 하는 행위라면 업으로서 행하는 것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계속적 의사 아래 행한 행위인 이상 1회의 제공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3.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

사실 이 개념이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규정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개정법률)을 참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한정제공데이터”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데, 여기서 한정제공 데이터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임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특정인이란 1인이든 다수이든 상관 없다(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정인 혹은 특정 다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꿔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즉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로서, 그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들은 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경제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의 특성상 공개와 복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보호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카)목 부정경쟁행위 규정이다.

다만 공개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인의 권리로서 독점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고,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제공 대상이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 즉 ‘한정제공 데이터’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해당되는 예시로는, 회비를 지불하면 누구라도 제공 받게 되는 데이터에 관하여 회비를 지불하고 제공은 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참가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자를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웹사이트에 방문한 자3)와 같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과 달리 볼 바 없는 경우나, 공중이 무상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오픈데이터)에 접근한 자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4.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전자적 관리성 요건은 그 데이터가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 한정해서만 제공된다는 것을 외부의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ID·패스워드(Something You Know), IC카드·특정 단말기·토큰(Something You Have), 생체정보(Something You Are), 전용회선(專用回線)에 의한 전송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상당량 축적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 축적됨으로써 거래대상이 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음

영업비밀 보호규정과 중복 보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6)는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7.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널리 기술상 또는 영업상 활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 정의규정에서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7가지 표지를 갖춘 데이터는 본 조의 데이터로서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접근권한 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제공하는 행위, 3) 위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카)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가상의 사례는, 특정분야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A社가 그 플랫폼 사업을 위하여 오랜 기간 상당량 축적한 전자정보들을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하여야만 회원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데이터는 A社의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한정제공데이터로서 (카)목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하는 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권한 없는 B가 A社의 위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한다면 이는 본조 위반인 행위라고 평가된다.

아직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가 집적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위 규정의 의미를 미리 파악해 두어 권리보호 및 리스크 방지에 만반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민후 소식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로펌’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툼슨로이터 자회사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는 매년 ALB Korea Law Awards를 개최하여 각 부문별 올해의 로펌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신기술, IP/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인정받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올해의 부띠크 로펌’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외에도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파이널리스트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후는 개인정보, AI 등 신기술 분야는 물론,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건 수행을 통해 그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야놀자-여기어때 크롤링 분쟁, 핑크퐁 상어가죽 저작권침해 분쟁,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부띠크 로펌’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이와 더불어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에 오르며,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민후 소식

양진영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 올라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법률전문 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영화 '명량', '한산' 제작사를 대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은 물론,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부동산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일구며 IT/신기술, IP/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산업기술의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AI기술이 보편화 된 현대 사회에서의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방안, 생성형 AI 관련 법적 이슈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전문성을 보태왔습니다.

아시안리걸비즈니스는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양진영 변호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난 전문성을 인정하여 양진영 변호사는 'Young Lawyer of the Year'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민후 소식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서비스사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피고소인 등이 자사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 등에 무단 활용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예약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 서비스에 허위 예약하여 고객사 정보를 얻은 뒤 예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보유한 고객사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과 피고소인들이 허위 예약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 고객사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후는 피고소인들이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